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11. 11 선고 2019가단22110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1. B

2. C

3. D

4. E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태승

담당변호사 정인기

피고 1. F

2. G

3. H

4. I

5. J

6. K

7. L

8. M

9. N

10. O

11. P

12. Q

13. R

14. S

15. T

16. U

17. V

18. W

19. X

20. Y

변론 종결 2020. 10. 21.

판결 선고 2020. 11. 11.

주 문

1. 피고들은, 각 원고들에게 각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'원고별 이전 지분' 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. 12. 1.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F, G, Y에 관하여: 공시송달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: 자백간주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조원경

별지